

2022년 2차 경찰학 해설(2022. 8. 21. 완성)

- 웹비스경찰학원 경찰학 박우찬

경찰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인문대학 졸업, 대학원 수료
경찰인재개발원 경무기획 외래교수
(전) 경기남부경찰청, 제주경찰청 근무

2022년 2차 채용	문항 수	출제 영역
경찰학의 기초이론	6	경찰개념, 경찰이념, 경찰윤리3, 범죄예방1
경찰행정법	20	기초이론2, 조직법3, 경찰공무원법4, 경찰작용법6, 경찰관 직무집행법3, 경찰구제법2
경찰행정학	4	인사관리2, 개인정보보호1, 경찰통제1
한국경찰사 비교경찰	1	한국경찰사
분야별 경찰활동	9	생활안전3, 수사3, 교통1, 경비1, 정보1

1.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년 2차 채용]

- ①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 ② 1648년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 ③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 ④ 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범죄처벌법전」(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었다.

<해설> 1795년 프랑스 「경범죄처벌법전」(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었다. 이후 독일에서는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을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다.

정답 ④

웹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년 2차 채용]

- ①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등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된다.
- ②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등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 ③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관한 범죄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 ④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해설>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정답 ③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2년 2차 채용]

- ①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② 경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 2명이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해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이 결격사유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경우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3호에 있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경우에 제20조 제7항 제3호에 있다.

정답 ②

4. 경찰재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2차 채용]

- ①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여지가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과는 관련이 없다.

워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웹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 ② 재량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결정재량이라 한다.
- ③ 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④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를 벗어난 것을 말하며,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법적·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의 운전면허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재량여지가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과는 관련이 없다.

- ② 결정재량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가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 ③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 ④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를 벗어난 것을 말하며,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법적·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 ※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정답 ④

5. 다음은 경찰활동의 기본이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22년 2차 채용]

<보기 1>
(가)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기 2>
㉠ 인권존중주의 ㉡ 민주주의 ㉢ 법치주의 ㉣ 정치적 중립주의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해설> (가)는 경찰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경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권존중주의, (다)는 공무원은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주의에 관한 내용이다.

정답 ③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2년 2차 채용]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OO경찰서 소속 경찰관 甲이 모 교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요청받아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5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금액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 개념에 포함된다.

<해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제1호).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OO경찰서 소속 경찰관 甲이 모 교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요청받아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5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금액을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정답 ④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7.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이론(가설)에 관한 설명이다. 주장한 학자와 이론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22년 2차 채용]

㉠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신입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에게 물 들게 된다는 것으로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 시카고 경찰의 부패 원인 중 하나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 시켰다'라는 주장이 거론된 것처럼 시민사회가 경찰관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용인할 때 경찰관이 부패 행위에 빠져들게 된다.

- ① ㉠ 델라트르(Delattre)-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니더호퍼(Nei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구조원인가설
- ② ㉠ 셔먼(Sherman)-구조원인가설
 ㉡ 델라트르(Delattre)-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③ ㉠ 니더호퍼(Nei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구조원인가설
 ㉡ 윌슨(Wilson)-전체사회가설
- ④ ㉠ 윌슨(Wilson)-전체사회가설
 ㉡ 펠드버그(Feldberg)-구조원인가설

<해설> 신입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에게 물들게 된다는 내용은 구조원인가설이고, 대표적인 학자는 니더호퍼(Nei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이다. 시민사회가 경찰관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용인한다는 내용은 전체사회가설이고, 대표적인 학자는 윌슨(Wilson)이다.
 정답 ③

8.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경찰의 윤리적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년 2차 채용]

OO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 甲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경찰관을 폭행하자 교통, 정보, 생활안전 등 다른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경비분야만 생각하고 검거 결정을 하였다.

- ① 부권주의 ② 소외
- ③ 차별 ④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

<해설> 전문직업화의 문제점으로 소외(alienation)는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전문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처럼 경찰관 甲이 다른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경비분야만 생각하고 검거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소외'에 해당한다.
 정답 ②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22년 2차 채용]

-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의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은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자연적 감시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 ㉡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를 활동의 활성화(활용성의 증대)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놀이터·공원의 설치,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통행로의 설계 등이 있다.
-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자연적 접근통제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방범창, 출입구의 최소화 등이 있다.
-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를 유지관리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청결유지, 파손의 즉시보수, 조명의 관리 등이 있다.

- ① ㉠(O) ㉡(X) ㉢(X) ㉣(O) ② ㉠(O) ㉡(O) ㉢(X) ㉣(O)
 ③ ㉠(X) ㉡(X) ㉢(O) ㉣(O) ④ ㉠(O) ㉡(O) ㉢(O) ㉣(X)

<해설> ㉢ 통행로의 설계는 자연적 접근통제의 사례에 속한다.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를 활동의 활성화(활용성의 증대)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놀이터·공원의 설치,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등이 있다.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영역성의 강화라고 하고, 이에 대한 종류로는 울타리(펜스)의 설치, 사적·공적공간의 구분이 있다. 방범창, 출입구의 최소화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의 사례에 속한다. 정답 ①

10.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할 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2차 채용]

- ㉠ 경찰관의 학교 앞 등교지도
 ㉡ 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홍보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 공무원에 대해 특정종교를 금지하는 훈령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관서 보호
 ㉥ 붕괴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출입금지

- ① ㉠㉡㉢ ② ㉠㉡㉣ ③ ㉠㉢㉣ ④ ㉡㉢㉣㉤

웹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해설> ㉠㉡㉢은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행정작용이다.

㉠ 경찰관의 학교 앞 등교지도는 행정지도에 해당하고, ㉡ 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홍보는 홍보활동에 해당하여 비권력적 작용이므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아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급부행정에 해당하므로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 공무원에 대해 특정종교를 금지하는 훈령은 공무원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훈령은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지만, 공무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관서 보호는 대인적 즉시강제이고, ㉥ 붕괴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출입금지도 국민에게 부작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므로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 ㉠

11.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년 2차 채용]

- ① 고려시대 중앙에는 형부, 병부, 어사대, 금오위 등이 경찰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중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규탄하고 풍속교정을 담당하는 등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 ② 이준규 서장은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명령이 내려오자 480명의 예비검속자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라는 연설 후 전원 방면하였다.
- ③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 경찰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투경찰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 추가되었고 소방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서 배제되는 등 경찰활동의 영역에 변화가 있었다.
- ④ 구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었다.

<해설> 구레경찰서 안종삼 서장은 1950년 7월 24일 전쟁발발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 명령이 내려오자 480명의 예비검속자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라고 연설한 후 전원을 방면하여 구명하였다.

정답 ②

1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2차 채용]

- ①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웹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③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비위의 성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④ 적법 및 위법을 불문하고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라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해설> ①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즉 위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관할 관청이 달성하려는 '생활폐기물의 적정하고도 안정적인 처리'라는 공익과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변화 및 처리능력, 위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전후하여 14개 업체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으로 기존 청소 질서가 파괴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청소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함으로써 공익을 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불허가처분을 통하여 관할 관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허가가 가능하리라고 믿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도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대판 1998. 5. 8. 98두4061).

② 대법원 1997. 3. 11. 96다49650

③ [1]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선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학습지 채택료를 수수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무마비를 전달하려고 한 비위를 저지른 사립중학교 교사들 중 잘못을 시인한 교사들은 정직 또는 감봉에,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교사들은 파면에 처한 것이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9. 8. 20. 99두2611).

④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라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위법하게 성립한 경우, 통설은 국민의 위법행위 요구에 국가가 이를 승인하면 법치주의가 붕괴되는 결과가 되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규칙에 따른 종래의 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13.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2년 2차 채용]

- ① OO경찰서 소속 지구대장 경감 甲과 동일한 지구대 소속 순경 乙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甲의 감독상 과실책임만으로 관련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은 OO경찰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경찰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 ③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OO경찰서 소속 경사 丙에 대한 정직처분은 소속기관장인 OO경찰서장이 행하지만,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이다.
- ④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정 丁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그 표창이 丁에게 수여된 표창이 아니라 丁이 속한 OO경찰서에 수여된 단체표창이라면 감경할 수 없다.

<해설>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2항 제1호). 이에도 불구하고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1항 전단). 따라서 지구대장 경감 甲과 동일한 지구대 소속 순경 乙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경감 甲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경감 甲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는 OO경찰서가 소속된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된다.

② 경찰공무원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

※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11. 2012다200486).

③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OO경찰서 소속 경사 丙에 대한 정직처분은 임용권자인 시·도경찰청장이 행하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도 징계처분을 내린 시·도경찰청장이다.

[1]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시·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

워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3항).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한다(경찰공무원법 제33조 단서). 따라서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OO경찰서 소속 경사 丙에 대한 정직처분은 임용권자인 시·도경찰청장이 행한다.

[2]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34조). 따라서 정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도 정직처분을 내린 시·도경찰청장이 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1항 제2호

정답 ④

14.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2차 채용]

① OO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甲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 경장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임용권자가 순경 甲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순경 甲이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임용권자의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만 7세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한 경사 乙의 위 휴직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③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경위 계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위 丙의 위 근무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④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50만 원의 향응을 받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감 丁이 그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그 외 일체의 포상을 받은 사실 없음)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승진임용될 수 있다.

<해설> ①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구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와 함께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 그 등재순위에 따라 승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위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그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결국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4. 97누7325).

워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② [1] 휴직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육아 휴직)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에 포함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

[2] 육아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72조)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3] 따라서 만 7세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한 경사 乙의 위 휴직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③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6항 제1호).

[2] 따라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경위 계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위 丙의 위 근무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④ [1]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감봉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기간에 6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2호 나목, 제3호).

[2] 따라서 50만 원의 향응을 받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감 丁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승진임용될 수 있다.

정답 ①

15.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년 2차 채용]

OO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 甲이 법령준수 의무위반 등 각종 비위행위로 인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징계권자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순경 甲은 소청심사를 제기하고자 한다.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의 징계처분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더라도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취소명령결정을 내릴 경우, 그 해임의 징계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기 전에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④ 甲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甲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없다고 전제한다)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해설> ①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 해임의 징계처분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더라도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1]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간접적 명령)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취소명령결정을 내릴 경우, 그 해임의 징계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기 전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④ [1] 소청심사 청구(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소청심사 필수적 전치주의(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3] 따라서 甲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답 ②

16.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2차 채용]

甲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사건 당일에도 甲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집 안에서 음악을 크게 켜놓고 심한 고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인터폰으로 甲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甲은 심한 욕설을 할 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들이 甲을 만나기 위해 甲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甲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② 甲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지 않고 소란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甲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로 볼 수 있다.

워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웹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의 위법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고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경찰관의 조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즉시강제가 아니라 직접강제의 요건에 부합한다.

<해설> 전기차단기 사전(대법원 2018. 12. 13. 2016도19417)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①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④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③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인데, 피고인의 집이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갑, 을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식칼(전체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함으로써 갑, 을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례.

[4] 피고인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음악을 크게 켜놓거나 소리를 지른 것은 ②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금지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갑과 을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과 을이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④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의 목적에 맞게 제2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제6조에서 정한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 경찰관의 조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웹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즉시강제의 요건에 부합한다.

정답 ②

17.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2차 채용]

- | |
|---|
| <input type="radio"/> ㉠ 도로점용허가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input type="radio"/> ㉢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input type="radio"/> ㉣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
<input type="radio"/> ㉤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이라고 한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

[2] ㉠ 도로점용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형성적 행정행위이고, ㉢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는 경찰하명으로 명령적 행정행위이며, ㉣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는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모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 한편,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거부로 볼 수 있다.

※ 갑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6. 15. 2013두2945).

그러나 ㉤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은 외부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므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④

18.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2차 채용]

- ①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
-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워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③ 경찰작용은 행정작용의 일환이므로 경찰의 수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향후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적·보조적 작용이다.

<해설> ①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 그러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밖에서는 할 수 없다.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③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따라서 경찰의 수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적절한 설명이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정답 ④

19. 강학상 경찰허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2차 채용]

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상의 제한들도 모두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법령이 부과한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및 급부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

③ 강학상 허가과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④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해설> ① 일반적 금지가 상대적으로 해제됨으로써 허가를 받은 자는 적법하게 허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지만,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법령이 부과한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것이다.

③ 강학상 허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행하여질 수 있다. 이와 달리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필요적 신청).

④ 적절한 설명이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한 일반음식점 영업이라도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매하였다면 손님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④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2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2차 채용]

- ㉠ 주택가에서 흥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명령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제압하는 것
- ㉡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 ㉢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
- ㉣ 위험물의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 ㉤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 ㉥ 무허가건물의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 주택가에서 흥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명령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제압하는 것, ㉢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은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물의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행사하는 대인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3개이다.

그러나 ㉡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강학상 철회)하는 것은 제재 처분이고, ㉤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과 ㉥ 무허가건물의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이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21.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및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년 2차 채용]

- ①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 한다.
- ②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라 한다.
- ③ 정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다양한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 낸 새로운 정보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정보주체”라 한다.
- ④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해설> ① 제2조 제1호 나목

② 제2조 제1의2호

③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3호).

④ 제2조 제7호

정답 ③

22.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경찰관이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2차 채용]

- | | | | |
|-----------|--------|--------|-----------|
| ㉠ 언론기관 | ㉡ 종교시설 | ㉢ 민간기업 | ㉣ 정당의 사무소 |
| ㉤ 시민사회 단체 | | |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모두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하는 장소이다.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제5조)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1호. 언론·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2호. 민간기업 3호. 정당의 사무소

정답 ④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2차 채용]

- ①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 ② 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
- ③ 행정대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고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
- ④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

<해설> ① 통고처분은 실정법에 의해 행정부가 행하는 행정제재 작용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 또한 형사재판을 대신하여 간이·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하에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인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준사법적 행위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② 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즉시강제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행정청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워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③ 행정상 즉시강제는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고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하지만, 행정대집행은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④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도 재량의 여지가 있다.

※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본문).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63조 본문).

※ 관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1. 2006도1993).

정답 ①

24.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2차 채용]

- ① 사정재결은 인용재결의 일종이다.
- ②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 ③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 ④ 사정재결 이후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등의 효력은 유지된다.

<해설> ① 사정재결은 예외적 재결로서 기각재결의 일종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전단).

②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③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후단).

④ 기각재결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등의 효력은 유지된다.

정답 ①

2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2차 채용]

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이의(異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 관계 국가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국가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은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은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므로, 그 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한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④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여한 여러 권한을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지만,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해설> ①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6. 11. 2002다31018).

②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은 지는 것이다.

웹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2] 군행형법과 군행형법시행령이 군교도소나 미결수용실(이하 '교도소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계 감호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각종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 수용자들을 격리보호하고 교정교화함으로써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고 교도소 등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부수적으로는 그 수용자들이 탈주한 경우에 그 도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적 범죄행위로부터 일반 국민의 인명과 재화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결과(군교도소) 수용자들이 탈주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2. 14. 2002다 62678).

③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은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 그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1]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 정한 '상호보증'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국가배상법 제7조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할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2] 일본인 甲이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일본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 제6조가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상호보증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6. 11. 2013다208388).

④ 경찰행정에 대한 개입청구권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과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7. 11. 9. 2017다228083). 정답 ③

웹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2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2차 채용]

- | |
|--------------------------------|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
| ㉡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 ㉢ 아동학대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 ㉣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
| ㉤ 교통사고·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 |
| ㉥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 아동학대 수사, ㉤ 교통사고·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은 형사국장의 분장사항에 해당하고, ㉣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는 경비국장의 분장사항에 해당한다. ㉡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이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③

27.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2차 채용]

- ①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 ② ‘법률의 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 밖에 성문법과 불문법이 포함된다.
- ③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④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최루액의 혼합·살수 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살수차운용지침」(2014. 4. 3.)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지침에 따라 살수한 경찰관의 행위는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위헌·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해설> ①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치행정의 원리를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로 보며 구체적으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② 법률(법)우위의 원칙에서 ‘법률’이란 헌법,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 자치법규로서 조례·규칙, 관습법, 행정법의 일반원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을 뜻한다.

③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위임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할 수 있다.

워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④ [1] 혼합살수방법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침에 혼합살수의 근거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령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침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지침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 역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는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2018. 5. 31. 2015헌마476).

[2]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최루액의 혼합·살수 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살수차운용지침」(2014. 4. 3.)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 지침에 따라 살수한 경찰관의 행위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②

28.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2차 채용]

- ①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 및 자기의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 ② 수임청 및 피대리관청은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
- ③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에 귀속된다.
- ④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대리방식을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

<해설> ①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그 권한은 위임의 범위 안에서 위임을 받은 기관(수임기관)의 권한이 되고, 수임기관은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② 권한의 위임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수임청 및 대리기관에 의해 권한의 행사 효과가 귀속하는 피대리관청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되므로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

③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일 경우에 대리기관에 의한 법정대리가 이루어지며, 그 대리의 법적 효과는 피대리관청에 귀속된다.

④ 법령에 대리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사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보조적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법률상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대리방식은 ‘협의의 법정대리’에 해당한다.

정답 ③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29.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과 학자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22년 2차 채용]

- ㉠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발전되는 순차적 특성을 갖는다.
- ㉡ Y이론적 인간형은 부지런하고, 책임과 자율성 및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통제와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동기유발 전략이 필요한 유형이다.
- ㉢ 인간의 개인적 성격과 성격의 성숙과정을 ‘미성숙에서 성숙으로’라고 보고,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을 최대의 성숙상태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 ㉣ 위생요인을 제거해주는 것은 불만을 줄여주는 소극적 효과일 뿐이기 때문에, 근무태도 변화에 단기적 영향을 주어 사기는 높여줄 수 있으나 생산성을 높여주지는 못한다. 만족요인이 충족되면 자기 실현욕구를 자극하여, 적극적 만족을 유발하고 동기유발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

- ① ㉠ 매슬로우(Maslow) ㉡ 맥그리거(McGregor)
- ㉢ 아지리스(Argyris) ㉣ 허즈버그(Herzberg)
- ② ㉠ 매슬로우(Maslow) ㉡ 아지리스(Argyris)
- ㉢ 맥그리거(McGregor) ㉣ 허즈버그(Herzberg)
- ③ ㉠ 매슬로우(Maslow) ㉡ 맥그리거(McGregor)
- ㉢ 허즈버그(Herzberg) ㉣ 아지리스(Argyris)
- ④ ㉠ 맥그리거(McGregor) ㉡ 아지리스(Argyris)
- ㉢ 허즈버그(Herzberg) ㉣ 매슬로우(Maslow)

<해설> ㉠은 욕구충족 이론이므로 매슬로우, ㉡은 X이론·Y이론 중 일부에 관한 설명이므로 맥그리거, ㉢은 미성숙·성숙 이론이므로 아지리스, ㉣은 동기위생요인(위생만족요인) 이론이므로 허즈버그가 맞다.

정답 ①

30. 경찰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년 2차 채용]

- ①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현대에 이르러 조직발전의 기초로 작용하는 공무원의 능력 개발과 행정제도개선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 ② 전통적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생산성과 능률성에 중점을 두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인사행정의 표준화와 직무수행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 ③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평정자에 의한 집중화·엄격화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제2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분배해야 한다.
- ④ 총경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하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만 평정한다.

워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웹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해설> ③ [1] 제2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3항).

1호. 수: 20퍼센트 2호. 우: 40퍼센트 3호. 양: 30퍼센트 4호. 가: 10퍼센트

[2]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제3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4항).

[3]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제2 평정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분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1]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1항 전단, 제2항 단서).

[2] 제2 평정 요소에 가목, 근무실적, 나목, 직무수행능력, 다목, 직무수행태도가 있다.

[3] 총경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하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만 평정한다.

정답 ③

31.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른 때, 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2년 2차 채용]

①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찰공무원 甲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임용권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포함 12명이 출석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 2명, 정직 1월 2명, 감봉 3월 1명, 감봉 2월 1명, 감봉 1월 3명, 견책 3명으로 의견이 나뉠 경우, 감봉 1월로 의결해야 한다.

③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OO경찰서 소속 경위 乙의 경감으로의 승진임용을 시·도지사가 하므로, 경위 乙에 대한 휴직이나 복직도 시·도지사가 한다.

④ 순경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 丙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원하는 유예기간을 적어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해야 한다.

<해설> [1]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 제4항).

[2]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찰공무원 甲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대기 명령과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

② [1]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위원장 포함 5명~7명),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제7조 제1항). 이 규정과 관련하여 위원장 포함 12명이 출석한 징계위원회 구성은 징계령 규정에 위반된다.

웹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웹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2]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1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제조 제5항).

[3] 위원장 포함 12명이 출석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합의된 의견을 살펴보면,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그 다음 불리한 의견을 더하게 되므로 7명이 될 때의 의견인 감봉 1월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

③ [1] 경찰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하고,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3항, 제4항).

[2] 따라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OO경찰서 소속 경위 乙의 경감으로의 승진임용은 시·도지사가 하되, 경위 乙에 대한 휴직이나 복직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이 된 임용권이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다.

④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8조의2 제2호).

[2] 순경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 丙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원하는 유예기간을 적어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정답 없음>

32. 경찰작용 및 경찰공무원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2년 2차 채용]

-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 ㉥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 ① ㉠㉡㉢ ② ㉡㉢ ③ ㉡㉢ ④ ㉡㉢㉣

웹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해설> ㉠ [1]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행정심판법 제1조 목적).

[2]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제3조 제2항).

[3]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징계처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청구가 가능하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9호)

㉢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실명 대리신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되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므로 무기명 신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같음한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8조의2).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의 업무를 수행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 제3호). 따라서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한다. 다만, 감찰 대상의 공무원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정답 ㉡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33.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년 2차 채용]

- ①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112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지리감각, 언어 능력 및 상황 대처능력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을 선발·배치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②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112신고 이외 경찰관서별 일반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경찰관의 현장출동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받은 자가 접수한다. 이때 접수한 자는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 ④ 112종합상황실 자료 중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하고,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한다.

<해설> ①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112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지리감각, 언어 능력 및 상황 대처능력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을 선발·배치하여야 하며,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제6조 제1항, 제2항).

- ② 제10조 제2항 ③ 제8조 제2항
- ④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정답 ①

3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2차 채용]

-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 ㉢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해설> ㉠ 제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제2항

㉢ 제5조 제4항

㉣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없다(제5항 참고).

옳은 것은 ㉠㉡㉢ 3개이다.

정답 ㉢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년 2차 채용]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동법 제25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 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만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제25조의2(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1항

②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1항

③ 제25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3항, 제25조의4(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1항, 제2항

④ 제25조의6(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제1항, 제2항

정답 ②

워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웹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3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2차 채용]

- ㉠ ‘장기실종아동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미발견자의 자료는 소재 발견시까지 보관한다.
-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에 따른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해설> ㉠ ‘장기실종아동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9조 제1항
 ㉢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3항 제3호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1조 제5항
 옳은 것은 ㉢㉣ 2개이다.
 정답 ②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37.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년 2차 채용]

①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고 ‘피해자 조사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남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영상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자등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조사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해설> ① 제11조(피해자 후송) 제2항

② 제18조(조사 시 유의사항) 제1항

③ 제22조(영상물의 촬영·보존) 제2항

④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진술조력인의 참여) 제1항

정답 ④

38. 행사안전경비에서 군중정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년 2차 채용]

① 밀도의 희박화 - 제한된 면적의 특정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호간에 충돌현상이 나타나고 혼잡이 야기되므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사전에 혼잡상황을 대비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이동의 일정화 -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방향과 속도로 이동을 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③ 경쟁적 사태의 해소 -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시켜 질서 있게 행동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질서를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심리상태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지시의 철저 - 분명하고 자세한 안내방송을 계속함으로써 혼잡한 사태를 회피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워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해설> 밀도의 희박화 - 제한된 면적의 특정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호간에 충돌현상이 나타나고 혼잡이 야기되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하는 것이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사전에 혼잡상황을 대비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경쟁적 사태의 해소에 관한 설명이다.

정답 ①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2차 채용]

①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먼저 신고된 집회의 목적, 장소 및 시간, 참여예정인원,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라도 관할 경찰관서장이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했다면,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②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뿐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다.

③ 경찰관들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경우,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미신고집회'라는 사유로 자진 해산 요청을 한 후, '불법적인 행진 시도', '불법 도로 점거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위반'이라는 사유로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더라도 정당한 해산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더라도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를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경찰관서장이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

워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2. 11. 2011도13299).

② 질서유지선의 설정에 관한 집시법 및 집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집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질서유지선이 위 범위를 벗어나 설정되었다면 이는 집시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3. 27. 2016도18713).

③ 또한 위와 같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정의 및 질서유지선의 침범 등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과 같이 경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찰관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3. 27. 2016도18713).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다.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2010도6388 전원합의체).

정답 ①

웹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40.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2차 채용]

①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진단 3주)에게 ‘왜 와서 들이받냐’라는 말을 하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가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경찰서까지 갔을 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하였다면, 비록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란에 ‘발음 약간 부정확’, ‘보행상태’란에 ‘비틀거림이 없음’, ‘운전자 혈색’란에 ‘안면 홍조 및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 한다.

②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는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 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③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진로변경 금지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해설> ①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

[1]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 1명과 함께 술집에서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 앞 골목길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골목길과 오패산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오패산로에 진입하려 하던 중 골목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살짝 들이받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왜 와서 들이받냐’라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네 사람끼리 한번 봐 달라’고 하였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경찰서에 가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경찰서까지 갔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한 사실,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란에 ‘발음 약간 부정확’, ‘보행상태’란에 ‘비틀

웹비스경찰학원 무료해설강의 자료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http://cafe.naver.com/policechan>)

워비스경찰학원 박우찬 경찰학 기출 해설

거림이 없음’, ‘운전자 혈색’란에 ‘안면 홍조 및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거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인 사고 직후의 태도와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경위 및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취상태가 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2017도15519).

②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고,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 운전의 목적을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유효범위나 무면허운전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4. 2013도15031).

③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음주운전(제44조), 과로·약물 운전 등(제45조), 사고 발생 시 조치(제54조 제1항 구호 및 조치)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148조, 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은 도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등을 할 경우에 벌칙(형벌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2] 도로교통법상 통행규칙이나 벌칙은 도로를 전제로 함이 원칙이다. 무면허운전 등의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진로변경 금지 위반행위를 등 중에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정답 ④